의 안 번 호	제84호
의결 연월일	2019. 6. 20.

논산시 시민경찰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9년 6월 13일 조용훈 의원 외 5명

나. 회 부 일 자 : 2019년 6월 13일

다. 상 정 일 자 : 2019년 6월 20일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

2. 제안설명 요지 (제안설명자 : 조용훈 의원)

가. 제안이유

○ 지역의 선진교통질서 확립과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활동 중인 시민경찰연합회에 대한 지원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봉사활동을 도모하고, 단체의 내실화·활성화를 통하여 자율성 제고 및 조직원의 활동 역량을 강화하는데 기여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○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(안 제1조~제2조)

○ 교통질서유지, 기초질서 계도 등 시민경찰의 임무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
○ 시민경찰의 임무 수행에 따른 경비 보조 및 보조 중단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
○ 보조금 지원 관련 감독 및 평가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
○ 시민경찰의 교육 및 포상에 관한 사항(안 제6조~제7조)

○ 준용 규정(안 제8조)

○ 시행규칙(안 제9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: 생 략

4. 질의 및 답변 요지 : 생 략

5. 토론 요지 : 생 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